

2018년 2분기 희망퇴직 시행 공고

√ 희망직원이 퇴직 후 제2의 인생설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8년 2분기 희망퇴직을 시행하오니, 희망하는 직원께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신청기간** : 2018.06.08(금) ~ 06.15(금) 18:00까지

□ **신청자격** : 6개월 이상 정년 잔여직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

- 임금피크제 기 적용자 : 1958년 12월생 ~ 1962년 5월생
 - '18년 3분기 임금피크제 도래예정자 : 1962년 6월생 ~ 1962년 8월생
 - 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
 -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 -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
- ※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□ **신청방법** :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"희망퇴직 신청서" 접수

- 단, 공상/장애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및 신청사유 제출必
- ※ 증명서류 : 요양·보험급여결정통지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병원급 진단서
- ※ 소속 부서별 인사담당자 내역은 별도파일 참조

□ **처우** : 희망퇴직금 + 조정금(만58~59세) + 비금전적 보상 ***세부내용 불임 참조**

- ※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개인별 희망퇴직금은 ERP를 통해 확인 가능
(확인경로 : KATE>ERP→HR→개인업무→급여→퇴직금→예상액 조회)

□ **시행일정**

구 분	일 정	비 고
시행공고	6.8(금)	문서발송 및 전사게시판 공지
공고/신청접수	6.8(금) ~ 6.15(금)	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
지역별 시행설명회	6.11(월) ~ 6.12(화)	각 지역고객본부 회의실
인사위원회 심의	6.18(월) ~ 6.20(수)	
업무인수인계	6.21(목) ~ 6.25(월)	인수인계 및 퇴직서류 제출
퇴직발령	7.1자	

※ 퇴직안내 위주의 전사 워크숍(6.26 예정) 시행 후 퇴임행사는 부서별 자체 시행

※ 전직지원 교육은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퇴직 후 시행(희망자限)

□ 지역별 시행설명회 안내

- 목적 : 희망퇴직제도 신설 및 2분기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및 Q&A
- 일정/장소 : 6.11(월) ~ 6.12(화), 2일간 / 11개 지역고객본부 사옥 내 회의실
- 참석대상 : 각 지역별 희망퇴직 신청대상자 중 희망자
 - 희망자는 소속부서와 무관하게 가까운 지역으로 참석 가능
- 세부일정

구 분	일 시	장 소
수도권강북	6.12(화) 10:30	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2길 48 수도권강북본부 별관 2층
수도권강남	6.12(화) 15:30	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KT본사 지하1층 대강당
수도권서부	6.12(화) 15:30	경기 부천시 소항로 101 KT서부고객본부 6층 대회의실
부산	6.11(월) 14:00	부산 동구 자성공원로23 KT범일타워 6층 대강당
대구	6.12(화) 15:30	대구 북구 고성로 141 KT대구본부 6층 강당
전남	6.12(화) 11:00	광주 동구 제봉로 82번길 16 KT전남본부 3층 대강당
전북	6.11(월) 16:00	전주 완산구 온고을로 29 KT빌딩 3층 중회의실
충남	6.12(화) 15:30	대전 서구 둔산북로 51 KT충남고객본부 9층 대강당
충북	6.12(화) 15:30	청주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12 KT충북본부 5층 교육장
강원	6.12(월) 14:00	강원 원주시 원일로 269 강원본부 5층 대회의실
제주	6.12(화) 11:00	제주시 전농로 114 제주본부 5층 회의실

□ 문의처 :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김현철 차장(hyunchul.kim@kt.com)

[붙임] 희망퇴직자 처우

○ 희망퇴직금

[보상기준] (월 기준급 + 월 역량급)^{주1)} X 산정월수 X 지급율 주1) 단,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은 피크임금(100%) 기준 • 산정월수 :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2월당 1월, 5년초과 10년까지는 잔여월수 매4월당 1월 (최대 45개월) ※ 단, 잔여월수 계산 시 4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• 지급율(%) : $100 + [55 - \{(20/45) \times \text{산정월수}\}]$ ※ 135%(45개월 시) ~ 153.7%(3개월 시)
--

○ 조정금(금번 시행 限) : 만58세 200만원 / 만59세 100만원 (퇴직일 기준)

○ 비금전적 보상

- 감사선물 : 공로패, 여행상품권(150만원), 명예사원증
- 복지지원 : 통신비 보조(1년간 최대 월3만원), 동우회비 지원(22만원)